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 지정취소 및 공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체노출안전기준을 도입(안 제15조)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제적 통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종전의 일일허용노출량에서 인체노출안전 기준으로 용어 변경

나.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별표5)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평가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다.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안 제21조의2제3항)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함

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안 제21조의3제1항, 안 별표 6)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분석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을 신설

마. 업무의 위임(안 제24조의제1항 신설)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업무정지명령 및 공고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일일허용노출량)”을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일일허용노출량”을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잔류성오염물질 시험·분석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기관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대표자
4. 시설 또는 장비

5. 기술인력

6. 지정항목

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 · 소재지 · 대표자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지정연월일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의2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측정분석기관의 변경지정
2.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3.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변경지정·지정

취소·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공고

5.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시험·분석 능력의 평가
제27조 중 “별표 5와”를 “별표 7과”로 한다.

별표 5를 별표 7로 하고, 별표 7(중전의 별표 5) 중 “(제28조 관련)”을
“(제27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와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1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나.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 다.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다른 측정분석 전문기관(해당 기관의 다른 전문분야를 포함한다)이나 측정분석 전문기관 외의 업체 등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 라. 시설기준 중 사무실, 실험실 및 기기실은 각각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 마. 시설 및 장비는 해당 측정분석 전문기관에서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 중 사무실과 실험실 및 기기실은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기간 중 계약기간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변경된 임차계약서를 지정권자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바.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다이옥신 및 퓨란류를 기본항목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기본항목 이외에 잔류성오염물질을 분석항목으로 추가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6항제10호에 따라 고시된 잔류성오염물질 분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시험방법별로 분석항목을 신청할 수 있다.

2.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

가. 시설 및 장비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시설	1) 다음 시설을 모두 갖추되, 시설별로 구분·구획되어야 하고 총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후드시설을 갖춘 전처리실: 40제곱미터 이상 나) 향온·향습시설을 갖춘 고분해능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계실: 40제곱미터 이상 다) 장비보관실: 20제곱미터 이상

구분	시설 및 장비명
	라) 사무실
분석장비	1) 기본장비: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다이옥신 및 퓨란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의 장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가) 고분해능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분해능 만 이상으로 다이옥신 정량용 프로그램을 갖춘 것) 나) 속슬레추출장치 4세트 이상 다) 정제용컬럼 4개 이상 라) 회전증발 농축기 또는 질소 농축기 1세트 이상 마) 시료냉장보관실(4℃이하) 2) 선택장비: 다이옥신 및 퓨란 외 다른 잔류성오염물질을 분석항목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자는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각각의 분석항목별 분석방법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1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 조사방법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시료채취 장비 (선택)	1) 배출가스 시료 중 비의도적 잔류성오염물질을 분석항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및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배출가스로부터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의 장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가) 먼지포집부, 기체흡수부 및 기체흡착부 2세트 이상 나) 배출가스 유속 및 유량측정부 2세트 이상 다) 진공펌프 및 흡입기체 유량측정부 2세트 이상 라) 배출가스분석기(Flue gas analyzer, 일산화탄소 및 산소측정 가능) 2대 이상 2) 환경대기 시료 중 유기염소계 농약류 및 비의도적 잔류성오염물질을 분석항목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환경대기로부터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의 장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가) 하이볼륨에어샘플러(여과지와 XAD-2 수지 또는 활성탄 수지 펠트 및 폴리우레탄폼을 장착할 수 있어야 함) 3대 이상

구분	시설 및 장비명

나. 기술인력

구분	자격기준
책임자	기본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잔류성오염물질 분석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환경분야 기술사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잔류성오염물질 분석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환경 또는 분석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잔류성오염물질 분석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잔류성오염물질 분석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배출가스 시료 중 비의도적 잔류성오염물질을 분석항목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대기 또는 폐기물) 박사학위 또는 해당분야(대기 또는 폐기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대기 또는 폐기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해당분야(대기 또는 폐기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환경기사(대기 또는 폐기물) 자격을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담당자	기본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분석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환경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분석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 또는 분석 관련

구분		자격기준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분석업무 경력(보조경력 포함)이 2년 이상인 자
	시 료 채 취	배출가스 시료 중 비의도적 잔류성오염물질을 분석항목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명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분야(대기 또는 폐기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보조경력 포함)이 1년 이상인 자 2) 환경기사(대기 또는 폐기물)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보조경력 포함)이 1년 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분야(대기 또는 폐기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보조경력 포함)이 2년 이상인 자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세부기준
(제21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법게 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의2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 정지기간 중 측정·분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9조의2 제4항제2호	지정취소			
다.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의2 제4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19조의2 제4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	-------------	-------------	-------------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잔류성오염 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1) 잔류성오염물질을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지 않은 경우 가) 배기가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나) 폐수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3)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나.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사의 방법·범위 등을 위반한 경우 3)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다.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1) 잔류성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구역의 설정, 조업중지, 방제작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사고발생 원인, 오염 정도 및 확산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지 않은 경우 3)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라.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200	300	500
마.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거나 처리한 경우 1)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의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별표 2 제1호나목의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	법 제37조 제1항제3호	500 100	700 200	1,000 300

하는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3) 별표 2 제1호나목의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4) 별표 2 제2호의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바. 삭제 <2017. 3. 27.>				
사. 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2호			
1) 관리대상기기등 중 변압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관리대상기기등 중 변압기를 제외한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3) 관리대상기기등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4) 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100	200	300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법 제37조	100	100	100

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 을 한 경우	제3항			
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 입·시료채취·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	100	100	1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u>일일허용노출량</u>)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u>일일허용노출량</u> 은 킬로그램 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 로 한다. <u><신 설></u>	제15조(<u>인체노출안전기준</u>) ----- ----- ----- -- <u>인체노출안전기준</u> ----- ----- -----. 제21조의2(<u>잔류성오염물질 측정 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u>)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u>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 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5와 같 다.</u>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 전문 기관의 잔류성오염물질 시험· 분석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대 <u>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u>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를 말한다. <u>1. 기관명</u> <u>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u>

<신 설>

제24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3. 대표자

4. 시설 또는 장비

5. 기술인력

6. 지정항목

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9조의2
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
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
제5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 ·
소재지 · 대표자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지정연월일

제24조(권한의 위임) ② -----

-----.

1. · 2. (생 략) 2의2. <u>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행</u> <u>정처분의 공표</u> 3. ~ 10. (생 략) <u><신 설></u>	1. · 2. (현행과 같음) 2의2. <u>법 제16조제4항</u>----- ----- 3. ~ 10. (현행과 같음) ① <u>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u> <u>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u> <u>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u> <u>다.</u> 1. <u>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u> <u>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같</u> <u>은 조 제3항에 따른 측정분석</u> <u>기관의 변경지정</u> 2. <u>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u> <u>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u> <u>청의 접수</u> 3. <u>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u> <u>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u> <u>소 및 업무정지명령</u> 4. <u>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u> <u>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변</u> <u>경지정·지정취소·업무정지명</u> <u>령에 관한 공고</u> 5. <u>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따른</u> <u>잔류성오염물질 시험·분석</u> <u>능력의 평가</u>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 5</u>와 같다.	----- ----- <u>별표 7</u> <u>과</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6782